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주요 내용 검토\*

지 유 미\*\*

## I. 들어가며

‘기반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기반시설 활용의 도모 및 국가경제 발전에의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 2018년 12월 31일 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러한 기반시설관리법은 기반시설의 노후화 문제에 직면하여,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반시설의 신설보다는 기존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통해 기존 시설의 활용도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려 기획을 갖고 있다. 이뿐 아니라 동법은, 기반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사고가 이미 발생한 뒤에 이루어지는 사후적 대응이 아닌 사고 발생 이전에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기획 또한 갖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기반시설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먼저, 기반시설관리법 상 관리주체의 유형 및 의미, 기반시설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요건,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의무, 그리고 관리주체가 이와 같은

---

\* 본 논문은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한 전력산업정책개발사업인 “발전용량 관리계획,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기준 수립연구”의 최종보고서 중 저자가 작성한 부분(제5장 관리 재정 및 인력 확보 방안 중 5.1의 관리재정 확보)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대구대학교 법학부 부교수, 법학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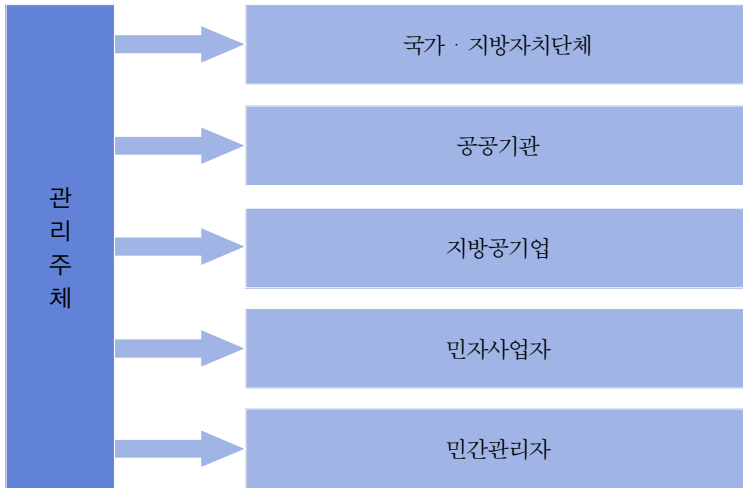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이와 같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기반시설 관리법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논문을 마치고자 한다.

## II. 기반시설관리법 상의 관리주체

기반시설관리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관리주체란 관계법령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로서 i)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ii)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iii)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 iv)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민자사업자”),<sup>1)</sup> 그리고 v) 그 밖에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민간관리자(이하 “민간관리자”)를 의미한다. 기반시설관리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만이 관리주체에 포함되었으나, 2020년 4월 7일에 동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민자사업자와 민간관리자까지 관리주체에 포함되게 되었다.

---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2020년 3월 31일에 개정되기 전까지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법이 2020년 3월 31일에 일부 개정되면서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2조 제8호에서 규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관리법 제2조 제6호 라목도 개정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었고, 2021년 12월 7일 일부 개정에서 동법 제2조 제6호 라목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개정되었다. 이처럼 개정된 기반시설관리법은 2022년 12월 8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그림 1] 기반시설관리법 상의 관리주체

기반시설관리법 상의 관리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법의 구체적인 적용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i) 기반시설관리법 상의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안전성·사용성·내구성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를 통해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노후화에 따른 생애주기비용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기반시설관리법 제3조 제1호), ii) 기반시설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반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기반시설관리법 상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로 국한된다는 점(제4조 제1호), iii) 기반시설관리법상의 관리주체에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는 점(제5조 제3항) 등에 기인한다.

기반시설관리법의 구체적인 적용과 관련해서는 이상에서와 같이 동법 상의 관리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뿐 아니라, 동법 상의 관리주체에 해당한다면 어느 유형의 관리주체에 해당하는지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특히, 기반시설

의 관리주체가 그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과 관련이 있다. 이는 기반시설관리법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규정하면서, 정부의 비용 지원(기반시설관리법 제20조, 제21조), 성능개선 총당금 적립 의무(제23조) 등과 관련하여 관리주체의 유형별로 서로 다른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는 데에 기인한다. 이하에서는 기반시설관리법상의 관리주체로서 i)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ii) 공공기관, iii) 지방공기업, iv) 민자사업자, v) 민간관리자 중 특히 공공기관(ii), 지방공기업(iii), 민자사업자(iv))의 의미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 1. 공공기관

기반시설관리법 상의 관리주체로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의미한다(기반시설관리법 제2조 제6호 나목).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기관 중 i)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제1항 제1호), ii)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제2호), iii)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임원 임면권한 행사 등을 통해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제3호), iv) 정부와 앞의 i)~iii)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임원 임면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제4호), v) 앞의 i)~iv)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 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

관(제5호), 또는 vi) 앞의 i)~iv)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제6호)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기반시설관리법 상의 관리주체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게 된다.

## 2.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한 기반시설관리법 상의 관리주체가 된다(기반시설관리법 제2조 제6호 다목).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지방공기업을 i) 지방직영기업, ii) 지방공사, iii) 지방공단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지방직영기업이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즉, 지방직영기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직접 경영형태’를 그 특징으로 한다면,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간접 경영형태’를 그 특징으로 한다.<sup>2)3)</sup>

이처럼 ‘간접 경영형태’를 그 특징으로 하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사이에는 몇몇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차이점으로는 민간출자 및 자체 손익금 처리 가능 여부를 들 수 있다. 즉,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50% 미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

2)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이와 같은 경영형태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김범석·박기경,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검토 제도와 개선방안의 제안”,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제14권 제3호,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18.12., 4-6면.

3) 주로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등은 지방직영기업의 형태로 설치되고, 지하철공사, 도시개발공사 등은 지방공사의 예가 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공단은 지방공단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최계영, “지방공기업의 법적 쟁점과 과제: 공법적 통제의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규제와 법」 제8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11., 74-75면 참조.

체 외의 자가 출자하는 것 또한 허용된다(지방공기업법 제53조). 이에 반해,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를 해야만 하므로(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2항, 제53조 제1항), 민간출자는 가능하지 않다. 이에 더하여, 지방공사는 손익금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지방공기업법 제67조), 지방공단의 경우에는 손익금에 대한 자체 처리가 불가능하다(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2항).

### 3. 민자사업자

민자사업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의미하며(기반시설관리법 제2조 제6호 라목), 이와 같은 민자사업자 또한 기반시설관리법 상의 관리주체에 해당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반시설관리법의 제정 당시에는 민자사업자가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기반시설관리법이 2020년 4월 7일에 일부 개정되면서 민자사업자 또한 관리주체에 해당되게 되었다.

기반시설관리법 상의 관리주체로서 민자사업자는,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의미한다(민간투자법 제2조 제8호). 이에 따르면, 민자사업자는 법인이어야 할 뿐 아니라, 공공부문은 민자사업자가 될 수 없다. 여기서 공공부문이란, i)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ii)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iii)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을 의미한다(민간투자법 제2조 제11호). 다만, 공공부문은 (공공부문 외의 법인인) 민간부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민관합동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민자사업자가 될 수 있다(민간투자법 제2조 제12호, 제13호).

민간투자법 상의 사업시행자, 즉 기반시설관리법 상의 관리주체로서 민자사업자가 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로가 있다. 먼저, ‘정부고시사

업<sup>4)</sup>의 경우 i)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주무관청에 의해 수립·고시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면, ii) 주무관청이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평가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sup>5)</sup> iii) 주무관청과 주무관청에 의해 지정된 협상대상자가 총사업비,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협상대상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방법이다(민간투자법 제10조, 제13조).<sup>6)</sup> 다음은 ‘민간제안사업’의 경우로 i) 민간투자대상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가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면, ii) 주무관청이 이와 같이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고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하며, iii) 주무관청이 최초 제안자의 제안서 및 제3자의 제안서를 검토·평가한 후 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sup>7)</sup> iv) 주무관청과 주무관청에 의해 지정된 협상대상자가 총사업비,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협상대상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

4) ‘정부고시사업’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대상사업을 발굴·지정하여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의 사업”을 의미하는데 반해, ‘민간제안사업’은 “법 제9조에 따라 민간이 민간투자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주무관청에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의 사업”을 의미한다(202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20호) 상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2조 제6호, 제7호).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2인 이상을 그 순위를 정하여 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6) 이론적으로는 주무관청이 우선협상대상자나 차순위협상대상자와 사업시행 조건 등에 관해 상당 기간 동안 협상을 진행한 후 가장 적절한 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그 협상대상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우선 협상대상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이 실무상의 관행이 되었다는 지적으로 김성수, “민간투자사업의 성격과 사업자 선정의 법적 과제”, 「공법연구」 제36집 제4호, 한국공법학회, 2008.6., 475-476면.

7)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12항에 따르면, ‘정부고시사업’의 경우와 유사하게 ‘민간제안사업’의 경우에도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둘 이상의 협상대상자를 그 순위를 정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되는 방법이 있다(민간투자법 제9조, 제13조 제3항).

### Ⅲ. 기반시설관리법의 적용대상

기반시설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반시설’<sup>8)</sup>에 대해서는 동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기반시설관리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로서 동시에 체계적인 관리와 예산의 지원이 필요한 기반시설이 동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앞(II)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반시설관리법상의 관리주체가 동법 제정 당시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국한되었다가, 민자사업자와 민간관리자까지 관리주체에 포함되는 것으로 동법이 개정된 바 있다. 기반시설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은 동법 상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관리주체의 범위 확대는 곧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반시설 범위의 확대로 귀결된다.

기반시설관리법 제4조 제1항은 이처럼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이 갖추어야 할 일반적 요건을 규정하면서도, 동법 동조 제2항에서는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종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기반시설관리법 시행령”) 제2조는 기반시설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종류 및 범위를 i) 도로, 철도, 항만 및 공항을 포함하는

8) “기반시설”의 개념 자체와 관련하여 기반시설관리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기반시설관리법 제2조 제1호).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기반시설이란, i)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ii)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iii)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iv)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v) 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vi)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그리고 vii)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의미한다.



교통시설, ii) 수도·전기·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및 송유설비를 포함하는 유통·공급시설, iii) 하천 및 저수지를 포함하는 방재시설, 그리고 iv) 하수도를 포함하는 환경기초시설로 규정하고(제1항), 이와 같은 기반시설의 세부 구분 및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다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제2항).<sup>9)</sup>

## IV. 기반시설관리법 상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기반시설관리법의 핵심은 기반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의 의무를 부여하는 데 있다. 이는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기반시설관리법 제1조)는 기반시설관리법의 목적조항으로부터도 도출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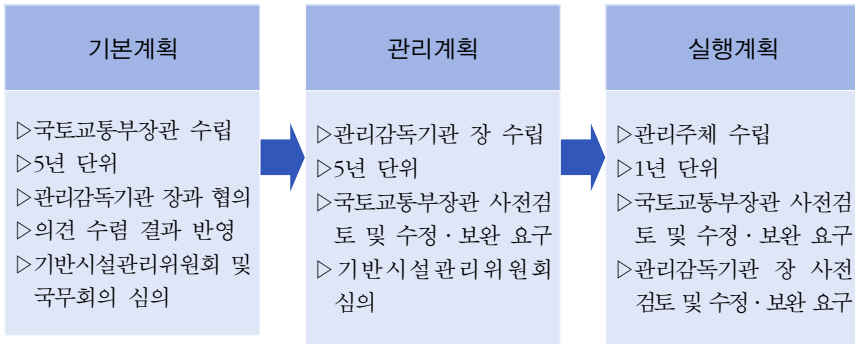
### 1.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의 체계화

기반시설관리법은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는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의무를, 관리감독기관<sup>10)</sup>의 장에게는 (기본계획에 따라)

9) 이와 같은 기반시설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기반시설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에서는 기반시설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세부 구분 및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10)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르면 관리감독기관은 관리주체 별로 정해지는데, i) 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이, ii) 관리주체가 민자사업자인 경우에는 민간투자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주무관청이 시·군·구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 iii) 관리주체가 민간관리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독기관이, iv) 이상과 같은 i)~iii)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이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의무를, 그리고 관리주체에게는 (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의무를 각각 부여하고 있다.<sup>11)</sup>



[그림 2] 기반시설관리법 상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체계화

먼저,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는데(기반시설관리법 제8조 제1항), 여기에는 i) 기반시설의 현황, 여건변화 및 미래 전망에 관한 사항, ii)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iii) 기반시설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iv) 기반시설 관리에 필요한 자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v) 관리감독기관의 장에 의해 수립·시행되는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동법 동조 제2항). 물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와 같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리주체별 관리감독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할 뿐 아니라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립의 결과를 반영해야 하며, 이와 같이 수립된 기본계획에 대해 기반시설관

소재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가 관리감독기관이 된다(제6조).  
 11) 물론, 관리주체의 실행계획 수립·시행의무는 기반시설관리법 제정 당시부터 인정되었던 것은 아니며, 2021년 12월 7일 기반시설관리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추가되었다.

리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동법 동조 제3항). 기본계획이 기반시설관리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게 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하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송부받은 기본계획을 즉시 관리주체에게 전달해야 한다(동법 동조 제5항).

다음으로, 관리감독기관의 장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기반시설관리법 제9조 제1항).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이처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검토 및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동법 동조 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관리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요구를 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주체와의 협의를 통해 관리계획을 수정 또는 보완한 후 다시 제출해야 한다(동법 동조 제4항). 기반시설관리위원회가 관리계획의 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투자의 시급성 등을 심의하여 확정된 후 그 결과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면,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확정된 관리계획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동법 동조 제5항). 이 경우 관리주체는 확정된 관리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동법 동조 제6항).

이에 더하여, 관리주체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에 의해 수립된 관리계획에 따라) 다시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기반시설관리법 제9조의2 제1항). 이처럼 관리주체가 수립한 실행계획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되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이를 다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동법 동조 제2항, 제3항). 실행계획을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실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실행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와 같은 요구에 따라야 한다(동법 동조 제4항).

이상에서와 같이, 기반시설관리법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는 관리계획 및 실행계획에 대한 수정·보완 요구권을, 그리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는 실행계획에 대한 수정·보완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반시설관리법은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법정계획이 그 상위 법정계획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여,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이 체계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놓고 있다.

## 2.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의 내용

기반시설관리법 상 관리주체가 부담하는 유지관리 의무와 관련하여, 기반시설관리법은 ‘유지관리’를 기반시설의 기능 보전 및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일상적 점검·정비, 손상된 부분의 원상복구,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2호). 이와 같은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와 관련해서도, 기반시설관리법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최소한의 유지관리기준에 관한 지표, 즉,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1조 제1항), 관리주체는 이와 같이 설정·고시된 최소유지관리기준 이상으로 소관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해야만 한다(제10조 제1항). 이뿐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와 같은 최소유지관리기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통기준으로서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을 설정·고시할 수 있는데(기반시설관리법 제11조 제2항), 만약 이처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을 설정하여 고시한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이와 같은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적합하도록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동법 동조 제3항).

관리주체는 또한 기반시설관리법 상 기반시설에 대한 성능개선 의무도 부담한다.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르면, 여기서의 ‘성능개선’이란 기반시설의 주요

구조부나 외부 형태의 수선·변경을 통해 기반시설의 가치 증가와 수명 연장을 도모하는 활동을 의미한다(제2조 제3호).<sup>12)13)</sup>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에서와 유사하게,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소관 기반시설에 대해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성능개선기준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기반시설관리법 제13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 또한 이와 같은 성능개선기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통기준, 즉, 성능개선 공통기준을 설정·고시할 수 있고(기반시설관리법 제13조 제2항), 이처럼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성능개선 공통기준이 설정·고시된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이에 적합하도록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하여 고시해야 한다(동법 동조 제3항).

## V.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 1. 기반시설관리법 상 관리주체의 재원 조달 의무

기반시설관리법은 관리주체에게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의무를 부과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그와 같은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

12) 기반시설관리법 상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의 개념 구분이 ‘수익적 지출’ 및 ‘자본적 지출’의 개념 구분과 유사하다는 견해로 윤원권·강고운,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의 의미와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제21권 제5호, 한국건설관리학회, 2020.10., 24면. 이에 따르면 ‘수익적 지출’은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로서 유지관리와 유사하고, ‘자본적 지출’은 내용연수의 연장이나 가치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지출이라는 점에서 성능개선과 유사하다고 한다.

13) 유지관리에 비해 성능개선은 투입되는 비용도 막대하고 공사 주기도 긴 점 등에 비추어, 투자를 위한 의사결정이 특별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더욱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로는 윤원권·정인수,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에 기반한 성능개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대한토목학회지」 제69권 제9호, 대한토목학회, 2021.9., 58면. 여기서는 특히, 기반시설의 ‘주요구조부’ 또는 ‘외부 형태’에 해당하는 범위를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설정하거나, 또는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의 구분에 관한 상세한 사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위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관리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관리법 제5조 제3항,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조달하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1조 제1항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 이상으로 관리되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0조 제3항을 들 수 있다. 이하에서는 관리주체가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드는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시설관리법 상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 2. 기반시설관리법 상 관리주체의 재원 조달 방안

### (1) 정부 지원

우선, 관리주체는 정부 지원을 통해 소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한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 기반시설관리법 제20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에게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일반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하면, 동법 제21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비용 지원의 대상이 되는 관리주체, 비용 지원의 형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관리주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 및 성능개선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i) 소관 기반시설의 건설 당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였을 것, 그리고 ii) 소관 기반시설과 관련하여 관리계획- 2021년 12월 7일 일부 개정된 기반시설관리법(법률 제18564호)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관리계획 및 실행계획 -이 수립되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한다(기반시설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이에 더하여, 관리주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성능개선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관리주체는 기반시설관리법 제23조 제

1항에 따른 성능개선 총당금을 적립하였어야만 한다(기반시설관리법 제20조 제3항).

이상의 요건들을 모두 갖춘다고 해서 관리주체가 정부로부터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우선, 정부로부터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가 지원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공기업, 그리고 민간관리자로 국한(기반시설관리법 제21조 제1항)된다는 점에 기인한다. 즉,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관리자에 대해서만 유지관리비용 및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민간관리자에 대해서만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기반시설관리법 상의 관리주체 중에서도 민자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유지관리비용 및 성능개선비용을 지원 받을 수 없다. 이에 더하여, 정부로부터 유지관리비용 및 성능개선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관리주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관리주체의 유형에 따라 정부 지원의 형식은 차별화된다. 즉,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i) 기반시설 실태조사 및 성능평가, ii)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조사, 진단, 연구 및 보수·보강, iii) 기반시설의 성능개선, iv) 그 밖에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sup>14)</sup>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출자, 출연, 보조 및 융자의 형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기반시설관리법 제21조 제1항). 이에 반해, 민간관리자의 경우에는 이상에서와 같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융자의 형식으로만 지원받을 수 있을 뿐이다(기반시설관리법 제21조 제2항).

## (2)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 부과·징수

기반시설관리법 상의 관리주체는 또한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

14) 기반시설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이는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한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을 부과·징수함으로써 소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즉, 기반시설관리법은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운임, 통행료, 사용료 등을 부과하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사용량에 비례하는 부담금(즉,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2조 제1항). 물론, 기반시설관리법은 관리주체가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부담금을 운임, 통행료, 사용료 등의 100분의 10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제22조 제3항). 이뿐 아니라, 기반시설관리법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이와 같이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조성한 재원을, 부담금을 징수한 기반시설과 동일한 종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제22조 제2항).

다만, 기반시설관리법 제22조 제1항의 범문언에 따를 때, 관리주체는 그 소관 기반시설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 기반시설관리법 제22조 제1항은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운임, 통행료, 사용료 등을 부과하는 관리주체”만이 그 사용자에게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려면,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 자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에게 운임, 통행료, 사용료 등을 부과하여야만 한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과 같은 기반시설은 그와 같은 기반시설 자체의 이용에 대해 사용자에게 운임, 통행료, 사용료 등이 부과되는 기반시설인 반면, 발전용댐과 같은 기반시설은 그 기반시설 자체의 이용에 대해 사용자에게 운임, 통행료, 사용료 등이 부과되는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sup>15)</sup> 발전용댐의 경우에는 이

15) 기반시설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상 도로, 철도, 항만, 공항은 교통시설로서, 그리고 발전용댐은 방재시설로서 기반시설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로부터 생산된 전기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에게 사용료가 부과될 뿐이다. 따라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과 같은 기반시설의 관리주체는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의 부과·징수를 통해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나, 발전용담과 같은 기반시설의 관리주체는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의 부과·징수를 통해 유지관리비용 및 성능개선비용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즉, 기반시설관리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의 부과·징수를 통한 재원 확보의 가능성 유무는 관리주체가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소관 기반시설의 구체적 유형에 따라 결정되게 되는 셈이다.

### (3) 성능개선 총당금 적립

기반시설관리법 상의 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총당금의 적립을 통해 소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즉,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성능개선 총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제23조 제1항 본문). 다만, 관리주체 중에서도 공공관리주체에 해당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성능개선 총당금 적립 의무가 인정된다(기반시설관리법 제23조 제1항 단서).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공기업은 성능개선 총당금을 반드시 적립해야 하는 데에 반해, 민자사업자와 민간관리자의 경우에는 재량에 따라 성능개선 총당금 적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앞(V. 2.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자사업자와 달리 민간관리자는 일정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용자 형식으로나마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 및 성능개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민간관리자가 성능개선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성능개선 총당금을 적립하고 있어야만 한다(기반시설관리법 제20조, 제21조).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i) 기반시설의 관리·운영을 통한 수입금 및 ii) 그 밖에 관리주체의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을 재원으로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제23조 제3항). 즉,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을 통한 재원 확보는 관리주체가 스스로 그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 지원이나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 부과·징수를 통한 재원 확보와 차별화된다.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가 적립한 성능개선 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소관 기반시설에 대해 성능개선을 하는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기반시설관리법 제23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물론, 관리주체가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성능개선을 위해 성능개선 충당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쳐야만 한다(기반시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 (4) 민간투자사업 활용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또한,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대한 재원 조달을 위해 민간투자법 상의 민간투자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제24조 제1항). 민간투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은 일반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원원 전략’의 하나로 이루어진다. 즉,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공공부문으로서는 민간의 자본과 기술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게 됨으로써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재정부담을 감수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어야 할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되고, 민간부문 또한 민간투자사업에 임함으로써 사용료, 임대료 등의 부과·징수를 통해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sup>16)</sup>

이와 같은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은 매우 다양하나,<sup>17)</sup> 주된 추진방식으

16)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원원 전략’으로서 민간투자사업의 이와 같은 특징에 대해서는 윤광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업구조 쟁점에 관한 고찰”,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제8권 제5호, 한국전자통신학회, 2013, 679-680면.

로는 아래[표 1]에서와 같은 BTO 방식과 BTL 방식을 들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 주된 추진방식	
BTO (Build-Transfer-Operate)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BTL (Build-Transfer-Lease)	사회기반시설의 준공(신설·증설·개량)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

[표 1] 민간투자사업의 주된 추진방식

위의 BTO 방식과 BTL 방식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가 일정 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보유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BTL 방식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그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수익한다는 점에서 BTO 방식과 차별화된다.<sup>18)</sup>

## Ⅵ. 나가며

이상에서는 기반시설관리법의 주요 내용으로서 관리주체의 유형 및 의미, 적용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요건,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및

17)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법 제4조 및 202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20호) 상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3조 참조.

18) 이런 점에서 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그리고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해당한다.

성능개선 의무의 내용, 그리고 관리주체가 이와 같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이와 같은 검토 결과, 기반시설관리법과 관련해서는 특히,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점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현행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르면 정부, 관리감독기관, 그리고 관리주체 사이에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 관련 의무가 현저히 불균형하게 분배되어 있다. 즉,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와 관련하여 관리주체는 현실적이고도 종국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데 반해, 정부와 관리감독기관은 이에 대해 선언적 의무를 부담하는 데 그친다. 예컨대, 기반시설관리법 제20조 제1항 본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의 건설 당시 비용을 부담한 경우 해당 기반시설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유지관리비용과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용 및 성능개선비용에 관한 정부의 지원을 규정하면서도, 이를 정부의 ‘의무 사항’이 아닌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반시설관리법이 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통해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기반시설 활용 및 국가경제 발전에의 기여라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정부, 관리감독기관, 그리고 관리주체 간의 재원 확보 의무는 현행 기반시설관리법에서보다 더 균형 있게 분배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기반시설관리법은 관리주체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용 및 성능개선비용을 마련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이와 같은 재원 확보 방안들은 그 실효성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 지원은 정부가 기반시설의 건설 당시 비용을 부담했을 것과 같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기반시설의 유형에 따라서는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의 부과·징수가 애초에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정부 지원,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 부과·징수 등의 요건

을 완화하여,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법석·박기경,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검토 제도와 개선방안의 제안”,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제14권 제3호,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18.
- 김성수, “민간투자사업의 성격과 사업자 선정의 법적 과제”, 「공법연구」 제36집 제4호, 한국공법학회, 2008.
- 윤광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업구조 쟁점에 관한 고찰”,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제8권 제5호, 한국전자통신학회, 2013.
- 윤원권·강고운,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의 의미와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제21권 제5호, 한국건설관리학회, 2020.
- 윤원권·정인수,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에 기반한 성능개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대한토목학회지」 제69권 제9호, 대한토목학회, 2021.
- 최계영, “지방공기업의 법적 쟁점과 과제: 공법적 통제의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규제와 법」 제8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국문초록】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주요 내용 검토

지 유 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2018년 12월 31일 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기반시설관리법은 기반시설의 노후화 문제에 직면하여, 새로운 기반시설의 신설보다는 기존 기반시설의 활용도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려 기획을 갖고 있다. 이뿐 아니라, 기반시설관리법은 기반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사후적 대응이 아닌, 사고 발생 이전에 리스크 관리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기획 또한 갖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기반시설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기반시설관리법 상 관리주체의 유형 및 의미, 기반시설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요건,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의무, 그리고 관리주체가 이와 같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한다.

본 논문은 또한 기반시설관리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기반시설관리법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이 제시하는 개선안은 주로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한 자원 확보와 관련된다. 본 논문에 따르면 먼저, 정부, 관리감독기관, 관리주체 사이에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한 자원 확보 관련 의무가 현행 기반시설관리법에서 보다 더욱 균형 있게 분배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관리주체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들의 실효성이 더

---

\* 대구대학교 법학부 부교수, 법학박사.

102 「인권이론과 실천」 제31호(2022.6.)

육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기반시설관리법, 기반시설, 관리주체, 유지관리, 성능개선



【ABSTRACT】

Study on the main contents of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Infrastructure Management

JEE, YUMI\*

The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Infrastructure Management was enacted on December 31, 2018 and came into effect on January 1, 2020. In the face of the aging problem of infrastructure, the Act seeks to maximize the utilization and efficiency of existing infrastructure rather than establishing new infrastructure. In addition, the Act seeks to anticipatively respond to safety accidents caused by infrastructure through risk management before such accidents occur.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main contents of the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Infrastructure Management.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s i) the type and meaning of the management entity under the Act, ii) the requirements of the infrastructure subject to the Act, iii) the management entity's obligation to maintain and manage the infrastructure and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infrastructure, and iv) the financial measures to raise funds for maintaining and managing the infrastructure and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the infrastructure.

This Article also proposes an improvement plan for the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Infrastructure Management based on the review of the main contents of such Act. The improvement proposed in this Article is mainly related to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for maintenance and management as well as performance improvement of the infrastructure. According to

---

\* Associate Professor, Division of Law, Daegu University, Ph. D.

this Article, the obligations related to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for maintenance and management as well as performance improvement of the infrastructure should be distributed more evenly than in the current Act among the government, supervisory agency, and management entity. Additionally, the effectiveness of measures for the management entity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for maintenance and management as well as performance improvement of the infrastructure should be further strengthened.

Keywords :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Infrastructure Management,  
infrastructure, management entity, maintenance and  
management, improvement of performance